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재)천주교까리따스수녀회유지재단 성요셉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 계획

제 1 장 총칙

제 1 조 (설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CCTV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보장, 권리보호, 노인학대 예방,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본 방침은 성요셉요양원(이하‘요양원’) 내 CCTV 운영과 화상정보 보호에 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방침을 따른다.

제 2 장 CCTV 운영 및 관리

- 제 4 조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 ①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는 시설장으로 한다.
- ② 운영담당자는 사무국장으로 지정하며, CCTV 설치 운영, 관련 민원의 접수·처리를 수행한다.
- ③ 모니터링 담당자는 케어복지팀장 및 의료재활팀장으로 지정한다.
- ④ 관리책임자는 운영담당자 및 모니터링 담당자를 겸할 수 있다.

제 5 조 (카메라 대수 · 위치 · 성능 및 촬영범위) ① 요양원 CCTV는 총 69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체적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침실: 31대
2. 공용공간: 31대 (공동거실 4대, 복도(1층) 2대, 복도(2층) 4대, 현관(1층/2층) 4대, 간호사실 1대,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식당(2층/3층) 2대, 엘리베이터 내/외부 2대, 면회실(3곳) 3대, 회의실(3곳) 3대, 도서관 1대, 기도실 1대, 주방출입문(뒤쪽) 1대, 세탁장 1대)
3. 외부공간: 7대 (주차장, 호수공원 및 시설 외부, 옥상)

③ 성능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은 Full HD(200만 화소) 이상, 해상도 1,920×1,080, 초당 15프레임 이상으로 한다.
2. 촬영범위는 출입구, 복도, 공용공간, 외부 출입구 및 주요 시설 안전구역으로 제한한다. 다만, 요양실 내부의 경우 입소자 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촬영범위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촬영하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간소화 해야 한다.

제 6 조 (CCTV 촬영시간 및 영상정보 보관기간 · 삭제주기) ①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 촬영일로부터 60일

③ 영상정보는 보관기간 경과 시 자동 삭제된다.

제 7 조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① 안내판 규격은 가로 210mm × 세로 297mm(A4용지)로 한다.

② 안내판은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③ 실내 게시판, 주요 통로 및 외부 진입로에 설치한다.

제 8 조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및 영상정보 열람장소) ①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CCTV 운영실에 있는 DVR

②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CCTV 운영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1층 CCTV 운영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 3 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 9 조 (영상정보 열람 가능 사유 및 제공·이용 제한 기준)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지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 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우
2.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이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1 등 법령에서 정하는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 등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할 수 있음
4.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노인안전업무 수행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③ 화상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입소자
2. 입소자의 보호자(입소자의 신상 결정 권한이 있는 후견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4촌 이내 친족)
3. 관계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및 법률적으로 열람이 가능한 기관) 등

④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영상정보의 외부 유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있다. 단, 영상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만 외부로 유출할 수 있고 영상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영상자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수사기관에서 요구한 경우
2. 기타 법률에서 유출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⑥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 ⑦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⑧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⑨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 ⑩ 화상정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CCTV 영상에 제3자가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제3자는 열람권 대상이 아니므로 비식별 처리가 필요하다(예: 모자이크 처리).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영상 전송 요구 시에는, 전송에 필요한 추가 설비 등을 고려하여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 ① 제9조 제2항 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열람을 요청하는 자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관련 공문서를 책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9조 4항에 따라 열람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받은 경우, 책임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확인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운영자의 금지행위 및 영상정보 안전관리 의무) 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장소를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저장장치 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3. 설치 목적과 무관하게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확대(Zoom-in)기능을 사용하거나 기타 기능을 남용하는 행위

②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3항의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한다.

제12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9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3조(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8조 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④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칙

제 15 조 (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3조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17 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통신비밀보호법」, 「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별지 제 2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동의서**

-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CCTV 미설치(미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 연락처: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서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 명	
	주 소			
신고내 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 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수급자 전원 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 받았기에 붙임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별지 제 4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미설치(미운영) 신고필증				
신고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장기요양기관명	
	주 소			
신고내용	신고내용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미설치(미운영) ※ 일부장소 미설치 시 미설치 장소 명확하게 표기 - 미설치(미운영) 기간: 20 . . . ~ 20 . . . 까지		
	동의자 현황	- 수급자 수: 명 - 동의자 수: 명 • 수급자 수: 명 • 보호자 수: 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미설치(미운영)하기로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별지 제 5호 서식]

장기요양기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동의서

-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 장소]

☒ 침실 ☒ 공동거실(복도포함) ☒ 현관 ☒ 물리(작업)치료실
☒ 프로그램실 ☒ 식당 ☒ 엘리베이터 ☒ 기타(1층·2층 내·외부)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기관의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수급자, 보호자 대상]

수급자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관계)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종사자 대상]

성명	생년월일	동의/반대 표시	날짜	서명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보호자(종사자) 연락처:

성요셉요양원 대표자 귀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 (☐ 열람 ☐ 존재확인) 요청서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청구영상 기록기간	(예: 연도, 월, 일, 시간 정확히 기록)	
	청구영상 설치장소	(예: 장기요양기관 내 장소 기입)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입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열람 ☐존재확인)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요셉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7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제한 [] 제공 등
기타)

수신자 :

주 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 월 일(오후 ~ 오후)	열람 장 소	
통지내용			
열람방법	직접방문을 통한 열람·시청		
사 유			
이의제기 방 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신청에 따라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성요셉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8호 서식]

정 정 · 삭 제 청 구 서				처 리 기 간	
				10일 이내	
청 구 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정보주체의 인 적 사 항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정정(삭제) 청구의 내용	파 일 명 칭		열 람 일	년 월 일	
	정정(삭제)할 항 목	정정(삭제) 내용 및 사유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의 규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성요셉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9호 서식]

번 호	정 정 (삭 제) 조 치 결 과 통 지 서			
제 호				
① 수 신	_____ 귀하 (주소 : _____)			
② 개인정보파일명				
③ 접 수 연 월 일				
④ 정 정 (삭 제) 결정 및 거부내용				
⑤ 정정(삭제) 거부사유 ※ 거부시만 작성				
⑥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⑦ 그 밖의 안내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 규정에 따라 귀하께서 청구하신 처리정보의 정정(삭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정정 결과의 내용에 불복하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재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요셉요양원 대표자 귀하				

[별지 제 10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이용 · 열람 · 제공)

[illegible]

작성요령

○ 구분: 이용/열람/제공 중 1개에 √ 표시

-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담당자)
 - 열람: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
- ※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사본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조치

○ 일시: 이용·열람·제공 일시 기재('23. 6. 30. 15:00 등).

○ 요청자: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
예시)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123-4567

○ 이용목적/사유: 목적/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노인학대, 안전사고 확인, 범죄수사 등)

○ 이용·열람·제공하는 근거: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

[별지 제 11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물파일 삭제·파기 관리대장

번호	파일명	파일생성일	파일 내용	삭제·파기 사유	파기일	파기담당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 12호 서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 운영(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 관리대장

' 25. . . ~ ' 25. . . 까지

[illegible]

C C T V 설 치 안 내 [예시]	
목 적	수급자 안전, 요양시설 보안, 화재예방 및 범죄예방 등
촬 영 시 간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설 치 장 소 [촬 영 범 위]	요양원 전체
책 임 자	책임자 : _____ 시 설 장 [연락처] 062-672-1134 운영자 : _____ 사무국장 [연락처] 062-672-1134

210mm

297mm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침실 촬영 동의서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서명합니다.
- 귀하의 서명은 귀하가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관한 내용을 이해했음을 의미합니다.
- 침실의 CCTV 촬영(미촬영)에 대한 귀하의 동의 여부를 해당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확인란에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수급자명	생년월일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날짜	보호자 성명	서명	
					수급자	보호자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 동의 기간: 20 . . . ~ 20 . . . 까지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 보호자 연락처:

성요셉요양원 대표자 귀하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장기요양기관의 영상정보를 열람 후 본인 이외의 다른 수급자나 제3자에게 열람한 영상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포·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서약의 위배 된 사항 발생으로 인한 기관 및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초상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열람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열람자	소속	직위	성명	(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제5호와 제6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제공받은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상정보를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년 월 일				
성요셉요양원 대표자 귀하				